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8. 12. 8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경위

2008.11.28. 제14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천민식위원외 6인의 동의로 발의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008.12. 8.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원안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시행령(대통령령제21075호, 2008.10.8 공포·시행) 일부개정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 지급금액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됨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월 2,104,000원으로 함.(안 제3조제2항)

4. 개정근거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3조

5. 개정조례(안) : 별첨

6. 예산조치 : 2009년도 예산편성(안) 반영

7. 기타사항 : 마포구의회정비심의위원회 2008-1(2008.11.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통보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월 3,483,300원” 을 “월 2,104,000원”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월정수당) ① (생략)</p> <p>②월정수당은 월 3,483,300원으로 한다.</p> <p>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p> <p>③ (생략)</p>	<p>제3조(월정수당) ① (현행과 같음)</p> <p>②월정수당은 월 2,104,000원</p> <p>-----</p> <p>-----</p> <p>③ (현행과 같음)</p>